KOSCA
대한전문건설협회
인천광역시회

수 신 회원사

참 조

제 목 지방계약 예규 개정 안내

---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행정안전부 회계계약제도과-7440('26.10.30), 7471('26.11. 2)과 관련입니다.

3. 위 호와 관련하여 지역·소규모 건설업체의 입찰참가 부담 완화, 적정 공사대가 보장 및 수의계약의 공정성 강화 등을 위해「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」및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」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□ 주요내용

가.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

1) 소규모 공사(4억원 이상 30억원 미만) 사고사망만인율 가점 신설

- 추정가격 4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적격심사 공사에 사고사망만인율에 따른 특별신인도 가점(최대 1점) 신설

2) 소액공사(8천만원 미만) 시공경험 평가 제외

- 추정가격 8천만원 미만 공사 적격심사 시 시공실적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시공경험 배점한도 만점 부여

3) PQ심사 시 지방 이전업체 신인도 가점 신설

- PQ심사 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본점 소재지를 과밀억제권역*에서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한 업체에 신인도 가점(1점) 부여

*** 과밀억제권역 :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내 일부 시·지역**

※ 시행일 : '26. 11. 2 시행

나.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

1) 건설공사의 부당한 물품계약 발주 금지

-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로 발주해야 하는 계약을 물품계약으로 발주하는 행위 금지 명시

2) 예정가격 산정 시 최신 단가 적용 의무화

-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발표된 단가자료를 활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도록 규정

3) 입찰공고 시 발주기관 단가산출서 사전공개 의무화

- 예정가격 산정에 적용된 단가·요율 및 세부 산출방법 등이 기재된 단가산출서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공개

4)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건수·금액 제한 신설

- 동일 회계연도 내 동일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의 건수·금액을 기관별로 각각 제한

※ (시·군·구, 세종·제주) 5회·2억 이하 / (시·도, 세종·제주 제외) 7회·3억 이하

5) 임금체불 명단공개 업체의 수의계약 참여 제한

-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업체는 최초 게시일부터 1년간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

6)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확대

-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경우 안전관리비 등 경비에 포함된 근로자까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능

※ 시행일 : '26. 11. 6 시행

붙임 1. 지방계약 예규 개정 주요내용 1부.
2.「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」개정사항 각 1부.
3.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개정사항 각 1부. 끝.

※ 붙임 문서는 협회 홈페이지(www.incheon.kosca.or.kr) - 시·도소식-공문/공지사항 참조바랍니다.

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
회 장 조 홍 수

담당자 선임 임윤환 파트장 유태원 팀장 조태원
시행 전건협 인천 제834호(2026. 11. 10)
우 21574/인천 남동구 인하로 507번길 38 4층(구월동, 전문건설회관)/ http://incheon.kosca.or.kr
전화 032-428-7331 / 전송 032-428-7334 / 전자우편 lyh@kosca.or.kr